

가출 청소년의 비행원인과 대처방안

A Study on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ping Plans for Runaway Jveniles

임 계 령*
Rim, Kye-Ryung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가출 청소년의 실태
- IV. 가출 청소년을 위한 대처방안
- V. 결 론

국문초록

가출은 단순히 집을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집을 떠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들로 하여금 유해환경의 접촉을 통하여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볼 때 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역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현실이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은 가정이나 학교에서부터 이탈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에 돌아갈 수 있게 보호와 또한 사회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출 청소년에 관련된 문헌을 통해 이론적인

논문접수일 : 2009. 3. 31.

심사완료일 : 2009. 5. 12.

게재확정일 : 2009. 5. 12.

* 박사과정 ·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근거를 세워 가출 청소년에 대한 개념 및 유형, 원인, 가출 청소년 실태 현황을 통하여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가정, 학교, 사회가 해야 할 일과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개선책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출 청소년의 비행에 대처하는 관련법규들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가출, 비행, 청소년, 청소년보호, 위험한 상황

1. 서론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 범람하는 향락적, 퇴폐적인 과소비문화와 청소년 유해환경의 늘고 있는 현실에서 가출 청소년들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집을 떠나게 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일탈현상이다. 최근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이나 학교생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일반 청소년까지 보편화되고 있고, 가출 청소년의 시작시기가 2006년도 남자인 경우 12.8세이며, 여자인 경우는 13.4세¹⁾로 점차 저연령화가 되고 있으며, 또한 단기가출에서 장기가출과 상습가출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가출 청소년들 대부분은 가출 이후 거리생활에 있어서 의식주 해결 및 경제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야기됨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행동 가능성과 유해환경에 가장 쉽게 접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통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조치나 귀가초치는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임시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문제와 이들에 대한 비행예방을 위한 조치들은 사회제도적으로도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로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 가출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청소년 가출 현황을 정확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05년도 가출 청소년은 13,294명으로 전체 가출자 46,149명의 28.8%를 차지하였다.²⁾ 그러나 이것은 신고 건수만을 가지고 통계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청소년의 가출이 이보다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은 단순히 집을 나온다는 것 자체보다 가출 이후에 행해지는 비행, 약

1)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66면.

2)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278면.

물복용, 성매매, 폭력범죄³⁾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피해자와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가출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거나, 오랜 가출기간동안 집을 벗어나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사회적응의 실패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또한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노숙자가 되거나 사회에서 소외되어 주변인으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출에 이어지는 가출 청소년비행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가출 청소년은 세계 각국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로 그 중요성을 인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또한 가출 이후의 청소년비행을 방지하고자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가출 청소년비행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가출 청소년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운영 방안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가출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는 가출과는 독립적인 청소년범죄의 영역으로 간주하게 되어 이어지는 가출 청소년비행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대책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출 청소년문제에 대해 기존문헌 자료에 위한 원인과 실태에도 관심을 두지만,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련법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또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담시설, 쉼터 등 사회적 지원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출의 개념

일반적으로 가출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중의 일인 혹은 다수가 자신의 지위에 해당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자기 집을 뛰쳐나가는 행위를 말한다. 가출은 연령에 따라서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3) 가출 이후의 범죄관련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출 이후 청소년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며, 둘째는 가출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비행이나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출 청소년들은 자신의 범죄의 피해자가 되 든 또는 행위자가 되 든 직·간접적으로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

는 성인들의 가출이 아닌 청소년의 가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관심의 증대와 연구를 통하여 가출의 개념보다 객관적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김준호와 박정선 연구자는 청소년의 가출에 대해서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나 해결을 위해 보호자의 승인 없이 최소한 하룻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나아가 돌아오지 않는 충동적 혹은 계획적 행위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윤찬영 연구자는 가출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적어도 하룻밤 이상을 집밖에서 지낸 것으로 정의 하였다. 그리고 나동석과 이용교 연구자는 가출 청소년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4조4)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하는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하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출을 비행으로 취급하고 있다.

가출(runaway)청소년이란 말은 가끔 노숙(homeless) 청소년이나 유기된(thrown away) 청소년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⁵⁾ 즉, 노숙 청소년은 보호 및 감독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이고, 유기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집을 나가라고 강요받거나 유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그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가출에 대한 여러 연구자의 정의들은 접근방식에서 다소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결국 가출자의 가출 의도와 가출행위 그리고 도피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출은 가출자의 의도나 목적에 의해 비롯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집으로부터 떠밀어내는 요인과 집밖으로 이끌어내는 요인이 혼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족구조의 결손,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문제, 부적절한 양육방식, 위기적 사건경험 등을 포함한 가정적인 요인들과 학업저하, 교우관계 악화, 교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학교관련 요인들이 청소년을 집 밖으로 밀어내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사회의 각종 유해환경과 퇴폐향락 산업 등은 청소년을 집 밖으로 유혹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가출 청소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가출 청소년은 성인 가출과는 달리규정 하여야 한다. 또한 위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어느 한 가지 관점을 통해 가출 청소년의 모든 형태를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라고 하였을 때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이나

4)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12. 시행. 법률 제8772호.

5) 한상철, 「청소년 문제행동」, 학지사, 2003, 293면.

혹은 있다고 해도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청소년의 가출은 설명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는 18세 미만' 이라고 하였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기준과 연령기준⁶⁾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구문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으므로 가출에 대한 정확한 범위 및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가출은 그 원인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어떤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2. 가출의 유형

가출 청소년에 대한 유형은 가출 청소년의 가출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따라 가출 청소년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가출을 분류 해왔으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의 가출 청소년과 관련하여 가출의 유형에 따른 분류의 필요성이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출 청소년과 관련된 복잡한 가출현상을 이해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가출 유형들을 먼저 외국의 분류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인(Greene)과 에셀스틴(Esselstyn)은 가출소년을 '떠도는 가출자', '불안한 가출자', '놀란 가출자'로 분류하였다. 떠도는 가출자는 순간의 즐거움을 찾는 자로서 추구형 가출자와 비슷하다. 불안한 가출자는 과도한 집안일, 신체적 학대 등으로 시달려 자신을 위해 도움을 청할 목적으로 흔히 몇 시간 혹은 하룻밤 정도 가출하는 경우이다. 놀란 가출자는 아버지나 계부로부터 성적 학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출하는 유형이다.⁷⁾

스프링거(Springer, 2001)는 가정에서의 갈등과 학대를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을 Huckleberry Finn형 가출로 부르고, 스티븐을 추구하여 가출한 청소년들을 Tom Sawyer형 가출로 부른다. Huckleberry Finn형 가출은 첨예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불안, 흥분, 폭발적 성격, 우울, 무력감, 극도의 피로감 등을 경험하면서 위기를 피하는 경우이다.

이정자(1973)연구자는 가출의 유형은 세 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이미 가출하여 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시설가출청소년이고 둘째는 무단가출청소년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락을 받은 가출자이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실정에서 빈곤한 농촌

6) 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규는 해당법규에 따라 소년, 아동, 미성년자 등으로 구별하고 있고 연령한계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자를 '아동',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연령층 대체로 12~13세부터 20세 미만자로 보고 있다.

7)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5, 347면.

에서 대다수의 자녀들이 더 잘 살게 되기를 바래서 20세 이전의 자녀를 도시로 떠나보내는 경우로 개별 이탈인 경우이다. 이들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대부분 아무 통제력이 없는 불량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 하였다. 한편 김현수(1980)연구자는 가출의 형태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미수성 가출은 가족과 심리적 결속이 강하여 가출을 해도 방황하다가 몇 시간 내에 집에 돌아오는 경우이다. 둘째, 탐구성 가출은 심한 반사회적 혹은 정신의학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쾌락이나 독립심을 찾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이다. 셋째, 일차성 가출은 심한 반사회적 행동은 보여주지 않지만 가출 그 자체는 그들 가족내 정서적 곤란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이다. 넷째, 정신장애로 인한 가출 행동 자체에 있어 비행이나 교정되기 어려운 반사회적 행동으로 간주되며 가출 후 반사회적 행동을 자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홍봉선(2002)연구자는 가출 청소년의 유형을 가출 목적에 따라 시위성 가출, 유희성 가출, 방랑성 가출, 추방성 가출, 생존형 가출로 5가지 유형화 하였다.

이용교(2005)연구자는 가출의 유형에는 가출 청소년의 안정된 숙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이나 보호기관 등에서 시설과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이용을 하지 않는 녹숙형, 구숙을 싫어하는 거부형, 집과 거리를 지내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전환경, 가출 청소년의 자립과 심리적 재활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탐색형, 또한 가정에서 갑자기 사업실패, 부모의 이혼, 가정해체 등을 겪게 되어 집을 떠나는 경우의 안정형, 그리고 청소년의 정신분열, 우울증, 성격장애, 해동장애 등 정신장애 혹은 정신지체를 겪고 있거나 약물이나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특수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3. 가출의 원인

가출 원인을 규명할 때 한 가지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복합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개인적 요인과 가정환경 요인, 사회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가출을 하게 된다. 가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개인적 요인과 가정환경 요인, 학교 환경 요인, 사회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욕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욕구를 사회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져 욕구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불만을 가출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출하곤 한다. 가출 청소년은 일반

심리적·정서적·정신 이상 혹은 부정적인 태도, 행동적 특성에 근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은 비 가출 청소년에 비해 해소되지 않은 외디푸스 콤플렉스, 심한 인격 장애, 낮은 자아개념, 높은 충동성과 공격성, 우울증을 포함한 신경증과 같은 개인 심리적 혼란 상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며, 자기 의심이 많고, 방어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출 청소년은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순간적 흥미에 마음을 잘 빼앗기며, 배회하는 것을 좋아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⁸⁾

한편 Roberts(1982)는 낮은 충동 억제, 신경증, 인격 장애, 부정적 자아개념에서 가출의 비롯된다고 하고 특히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가출 청소년들은 성폭력과 약물남용, 학업실패 등의 부적응 행동을 함께 나타낸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의 가출 청소년의 공통된 성격적 특징은 통제력 결핍과 충동성, 높은 불안감, 낮은 자기 존중감 등을 들 수 있으며, 그러나 가출 청소년이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나 정서장애의 표현이라고 보는 관점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닌다.

즉 쾌락적 충동의 통제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이라고 하여 모두가 가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개인적 성격요인이 청소년 가출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가출행동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⁹⁾

(2) 가정환경 요인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이며, 부모와 자녀를 구성원으로 애정과 자율성, 결속도, 일관성이 유지되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가정 즉, 부모의 정서적 긴장상태, 부정적인 태도, 일관성 없는 양육, 가족 간의 응집력상실 등으로 가정이 고통스럽고 지겨운 장소가 된다면 가족의 본래의 기능은 기대할 수 없어 그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가출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가출에 대한 가정적 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정의 구조적 결함과 기능적 결함으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는 가정의 빈곤 또는 부적응 등을 들 수 있다.

Roberts¹⁰⁾는 가출 청소년의 50%정도가 결손가정 출신임을 보고되고 있으며, Shellow¹¹⁾

8) 이용교,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2002, 66면.

9) 한상철, 전제서, 297면.

10) Roberts(1987), *Runaways and Non-Runaways-An Exploratory Study of Adolescent and Parental Coping*-The Dorsey Press Chicago, Illinois, p. 42.

11) Shellow et al. (1967) *Suburban Runaways of the 1960 s*. Monographs of the Societh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2(3), pp. 1-51.

의 연구도 가출청소년 48%가 결손가정 출신인데 비해 비교집단인 비가출아동의 경우에는 단지 18%만의 결손가정 출신임을 지적해 가출의 가족의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하는 바가 큼을 보여준다.

한편 구조적 결함이란 가족의 구조적결손으로 인한 모성·부성의 상실은 청소년의 정서 태도, 사회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 부적응을 초래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즉, 결손가정¹²⁾을 말한다. 다음은 가족의 기능적 결함은 형식적으로는 결손가정이 아니지만, 심리적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유대가 단절되고 가족 구성원의 간에 자기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가족의 혼란 또는 해체를 경험한 가정을 말한다. 가정불화, 방임, 애정결핍,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훈육방식, 부모와 자녀의 대화정도, 무관심 등은 가족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¹³⁾

또한 가정의 빈곤과 부적응에서는 먼저 빈곤가정인 경우 가정의 빈곤으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유사한 문제에 당면케 하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¹⁴⁾ 즉, 가출 청소년의 부모들은 가정의 빈곤으로 인한 자신의 문제들에 쫓여 있다 보면 집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 자체보다도 빈곤생활에서 면할 수 없는 양친의 무기력, 음주벽, 생활상의 무질서 등 빈곤에서 2차적으로 파생되는 방임과 갈등에 의하여 가출을 유도 하는 경향이 많다.¹⁵⁾ 또한 가정 부적응은 가정에서 부모이혼, 부모와 자녀사이에 갈등, 자녀의 학업 성적에 대한 부모의 과잉기대,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자녀들의 반발 등이 가정에서 청소년을 부적응을 낳고 있다.

(3) 학교환경 요인

청소년은 가족이외의 또 하나의 환경 중 청소년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응력을 육성하여 주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여 주는 학교를 들 수 있다. 학교란 개인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규율과 규범을 획득하는 사회적 대인관계를 능력을

12) '결손가정'이라는 말은 부모의 부존재가 곧 그 자녀의 결손으로 이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중립성이 없는 개념이다. 같은 내용의 말로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손가정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없다. 오히려 사회·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대상이라는 매우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손가정이라는 말 대신 '편부가정', '편모가정' 또는 '부모가 없는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13) 표갑수, 전제서, 349면.

14)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 학지사, 1998, 165면.

15) 권이중, 「청소년 이해론」, 교육과학사, 2006, 336면.

키우는 장이다. 학교생활에 있어서 청소년의 생활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학업성적, 친구 및 선생님관계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학업성적의 문제¹⁶⁾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학교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 가출의 사례가 비번하게 보도 되고 있다. 또한 불량 친구에 의한 가출요인이 가운데 친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그 중요성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크다. 그리고 입시위주의 수업과 상급학교 진학을 최우선에 두는 학교환경은 교우나 교사와의 관계에 있음을 볼 때 가출과 학교에서의 문제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교우의 폭력, 따돌림, 일부 교사의 학생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¹⁷⁾ 등도 가출행동의 요인이 되고 있다.

(4) 사회 환경 요인

청소년들은 처음으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접촉하게 되는 사회 환경의 자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환경은 그들의 가출이나 비행동기에 영향을 준다. 사회 환경이 가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의 기능이 약화와 해체 현상을 들 수 있다. 도시화와 개인주의, 확대가족의 해체, 물량가치에 의한 인간관계 등으로 지역사회의 통제와 통합사회화 기능이 약화되어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역할과 규범 준수를 외면하고 있다. 둘째, 세대 차이에 의한 갈등 관계이다.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유교적 사회규범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전통적 규범에 따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광복 후 학교와 매스컴에 의해 개인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사상이 지배적인 근대적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심한 가치갈등을 느끼며 가정, 학교, 사회에서 때로는 기성세대와 충돌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가출이나 비행에 빠지게 된다.¹⁸⁾ 셋째, 지역사회는 가출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대안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가출 청소년이 도피할 수 있는 은

16) 김준호, 형사정책연구에서 나온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 라는 연구보고서에 살펴보면 한국의 학생들은 부모나 사회로부터 공부에 대한 압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나 이러한 주위의 열망이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심리적 부담이나 부적응 혹은 아노미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부모나 주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다른 유대관계를 맺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가출이나 비행으로 빠지게 된다.

17) 가출 후 학교에 복귀했을 때 교사나 학교로부터 가출 또는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이 찍히고 처벌위주의 징계가 가해질 경우, 가출 학생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가출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18) 표갑수, 전계서, 354면.

신처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즉, 가출 청소년은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등에서 숙박을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게 된다. 넷째, 지역사회는 청소년을 성인문화에 참여시키거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출 청소년이 식당, 카페, 당구장, 성인오락실과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장이나 가게, 심지어 유흥업소에 취업하고 또한 성매매 등을 일삼고 있다. 가출 청소년이 이런 유해환경을 직·간접으로 경험함으로써 보다 많은 비행문제가 발생하며 또 다른 이차적 비행의 동기와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환경은 충동적인 비행의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행의 희생되기도 한다.¹⁹⁾ 다섯째, 청소년들은 TV, 영화 라디오, 각종 잡지와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회화가 된다. 또한 매스컴 기관의 경쟁은 극단적인 상업주의를 가져오며 그 결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물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 나쁜 영향을 끼쳐 청소년들은 그것을 자신의 사고와 감정 및 생활양식으로 내면화하여 비행에 몰들이게 한다. 마지막으로 불량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가출 및 범죄의 시작을 유발하며 범죄활동의 계속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동료들의 배척을 받게 되면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가출 및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

4. 가출 청소년 관련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관련법은 250여개나 되지만 입법 목적과 입법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 속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²⁰⁾ 하나의 법령이 둘 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가출 청소년에 관련된 몇 가지를 법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보호법²¹⁾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이용교, 전거서, 69면.

20)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학지사, 2009, 129면.

21)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법률 제8877호.

1) 청소년의 유해약물(동법 제2조)

술, 담배, 마약,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 작용을 해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2) 유해물건(동법 제2조)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 또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써 대통령이 정하여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3)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동법 제2조)

-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증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 무도장업
- 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특별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마.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음란 폭력적 행위를 매개하는 영업
- 바.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것
- 사. 회비 등을 받거나 유로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은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아동복지법²²⁾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에

22) 2008. 6. 13. 일부개정. 2008. 12. 14. 시행. 법률 제9122호.

함에 있다.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아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말한다. 즉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조치(동법 제10조)

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회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나.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다.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그 보호를 위탁하는 것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마.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3) 청소년기본법²³⁾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과 청소년육성의 정의를 명백히 밝히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나. 청소년의 성장을 위하여 가정과 사회가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회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문화관광부로 두고 있으며, 청소년육성의 기능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환경, 청소년문화, 청소년비행선도, 청소년상담의 일곱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3)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법률 제8852호.

이 법의 내용 중에서 가출 청소년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정의 책임(동법 제6조)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05. 12. 29)

② 사회의 책임(동법 제7조)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범주는 가출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동법 제8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동법 제5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필요한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가출·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²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자의 성명, 직업 등 신상공개 할 수 있도록 한 점으로, 이를 도입한 취지는 '청소년성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에 대한 보호처분(동법 제25조)규정에는 소년부판사는 소년법에 규정에 의하여 성매매 행위를 한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24)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법률 제8852호.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도보호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5) 경제적·노동 착취로부터 보호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실직가정이 늘어나고 가출 청소년 과 중퇴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노동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이 법 규정에 무시하고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 불법 취업하는 약점을 이용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소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15세 이상인 자만을 고용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근로자로 보호하고 있다. 15세 미만인자가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의무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노동부 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취직 인허의 금지 직종으로는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사용 직종은 물론,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숙박·요식업 업무, 엘리베이터의 운전업무 등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직종 등이 있다. 또한 18세 미만인자는 갱내작업, 고압전기 기구 취급, 5미터 이상의 땅굴에서의 업무, 진동이 심한 업무, 2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취급 업무 등 유해 위험 직종에 대해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시행령 제37조)

또한 18세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7조)

Ⅲ. 가출 청소년의 실태

1. 가출 청소년 현황

가출 청소년이 전년도 비해 감소하고 있지만 현재 가출 청소년의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통계는 없고 연간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통계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82센터에 신고된 20세미만의 가출 청소년은 2005년에는 13,294명으로 전체 가출자 46,149명의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16,894명에 비해서 3,600

명이 감소한 것으로 21.3%의 감소를 보였다.²⁵⁾ <표 1>에서는 2005년도 가출 청소년을 성별로 보면, 남자 6,195명(46.6%), 여자 7,099명(53.4%)으로 여자 청소년이 보다 많이 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가출청소년 현황 (단위: 명,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남자	여자
전 체	41,329	59,099	61,319	60,499	60,628	63,142	46,149	21,070	25,079
9세-20세 미만	15,316	18,442	18,276	14,865	13,374	16,894	13,294 (100.0)	6,195 (100.0)	7,099 (53.4)

자료 : 경찰청

2. 가출 충동 이유 및 인식

(1) 가출 충동 이유

가출 충동 이유 1순위로는 가족요인이 6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심리적 요인(19.4%), 새로운 도전(6.7%), 친구요인(5.1%), 학교요인(4.7%), 비행요인(1.1%)의 순이었다.

<표 2> 가출 충동 이유 (단위: %)

		가족요인	심리적요인	학교요인	친구요인	새로운 도전	비행요인
성별	남자	60.9	5.6	5.6	7.6	19.2	1.0
	여자	64.5	4.0	4.7	6.0	19.6	1.2
	계	63.0	4.7	5.1	6.7	19.4	1.1
연령별	13세 이하	53.8	11.5	3.8	7.7	19.2	3.8
	14-16세	61.5	5.4	5.4	6.5	19.6	1.5
	17-19세	63.8	3.8	5.8	6.6	19.2	8
	20세 이상	71.4	4.1	0	8.2	16.3	0
	계	63.0	4.7	5.1	6.7	19.4	1.1

자료 : 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25)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 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58면.

〈표 2〉는 가출 증동 이유 1순위는 성별, 연령별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출 증동을 느끼는 이유는 가정적 요인의 절대적으로 크고 그 다음 심리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출에 대한 인식

컴퓨터 이용 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가출은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출은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23.4%). 가출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8.1%). 가출은 문제 해결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11.8%). 〈표 3〉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46%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수단으로 가출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남자가 가출은 문제 해결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는 항목과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는데 반해 여자의 경우 가출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 가출에 대한 인식

(단위: %)

성별	남자	16.5	38.6	25.0	19.9
	여자	8.2	52.9	22.2	16.7
	계	11.8	46.7	23.4	18.1
연령별	13세 이하	14.8	25.9	29.6	29.6
	14-16세	10.4	46.6	23.1	19.8
	17-19세	13.3	48.0	22.8	15.9
	20세 이상	5.7	46.1	24.5	20.8
	계	11.8	46.7	23.4	18.1

자료 : 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컴퓨터 실태조사.

3. 가출 전·후 상황

(1) 첫 가출 나이

컴퓨터 이용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가출한 나이는 남자가 평균 13.2세이고 여자가 평균 14.5세였다. 첫 가출 나이는 13세 이하가 4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4-16세(43.9%), 17-19세(7.2%)순이었다. <표 4>에 의하면 청소년컴퓨터 이용 청소년 과반수 정도가 13세 이전에 가출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 가출 나이는 연령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13세 이하는 당연히 13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외 모든 연령에서 14-16세에 첫 가출을 하였다는 응답이 48% 이상인 것으로 나타 14-16세 가출 위험에 높은 시기임을 확인 할 수 있다.

2006년 조사에서는 첫 가출 나이가 남자의 경우 평균 12.8세이고 여자가 평균 13.4세인 점을 고려해 보면 첫 가출 나이가 한 살 정도 늦어졌다고 하겠다. 또한 2004년, 2006년 조사에 비해 14-16세가 다소 증가 하였고 나머지 연령은 다소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첫 가출 나이는 2006년 조사에서보다는 평균 한 살 정도 늦어졌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시절에 첫 가출이 높고 첫 가출 당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출 예방을 위해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예방 활동 및 조기 개입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표 4> 첫 가출 나이

(단위 %)

		연령			
		13세 이하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성별	남자	49.0	43.2	7.3	4
	여자	47.2	44.4	7.1	1.2
	계	48.0	43.9	7.2	9
연령별	13세 이하	100.0	0	0	0
	14-16세	67.0	32.1	0	0
	17세 19세	33.3	55.2	11.1	0
	20세 이상	31.0	40.5	19.0	9.5
	계	48.0	43.6	7.2	9
2006년		50.8	39.1	9.9	3
2004년		35.0	51.1	13.9	

2004년 통계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으로 질문하였음.

(2) 가출 후에 예로 사항

컴퓨터 이용 청소년들이 컴퓨터 입소하기 전에 잠을 해결한 곳 1순위는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이 4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찜질방(12.0%), 여관 등 숙박시설(9.3%), 아파트나 계단, 옥상, 지하실(7.7%), 다른 청소년컴퓨터 등 수용시설(5.8%), PC방 또는 만화방(5.8%), 놀이터 등 밖에서(3.6%)의 순위다. <표 5>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가출한 후 수용시설, 종교기관 등 성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곳에서 기거한 청소년은 8.9%에 불과하고 심지어 11.4%는 옥상이나 공원 등 밖에서 노숙을 하며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함께 생활함을 알 수 있다.

<표 5> 컴퓨터에 입소하기 전 잠을 해결 한곳 (단위: %)

		남자	여자	계	친구나 아는 사람	숙박시설	아파트나 계단, 옥상, 지하실	수용시설	PC방 또는 만화방	놀이터 등 밖에서	기타
성별	남자	41.8	9.8	10.9	7.8	4.3	6.3	2.7	9.4	7.0	
	여자	52.1	2.8	12.9	7.7	3.1	4.6	2.5	9.2	5.2	
	계	47.6	5.8	12.0	7.7	3.6	5.3	2.6	9.3	6.0	

컴퓨터 이용 청소년이 가출 기간 동안 사용한 용돈이나 생활비의 출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 2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빌림(20.2%), 집에서 훔쳐 온 돈(17.2%), 이전에 모아 두었던 돈(16.5%) 훔치거나 뺏은 돈(13.6%), 구걸이나 앵벌이(3.6%)의 순이었다.

<표 6> 용돈(생활비)의 출처 (단위: %)

		남자	여자	계	아르바이트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빌림	집에서 훔쳐 온 돈	이전에 모아 두었던 돈	훔치거나 뺏은 돈	구걸이나 앵벌이
성별	남자	25.8	14.2	17.7	8	18.8	1.2	17.3	4.2	
	여자	20.2	18.4	16.8	3.4	20.9	5.6	10.6	4.0	
	계	22.7	16.5	17.2	2.2	20.0	3.6	13.6	4.1	
연령별	13세 이하	5.3	5.3	36.8	0	5.3	5.3	26.3	15.8	
	14-16세	13.6	17.3	18.7	2.3	20.6	4.7	17.8	5.1	
	17-19세	27.7	14.7	17.3	2.7	20.7	3.3	10.7	3.0	
	20세 이상	39.5	30.2	2.3	0	20.9	0	4.7	2.3	
	계	22.7	16.5	17.2	2.2	20.0	3.6	13.6	4.1	

<표 6>에 의하면 용돈의 출처 1순위는 먼저 남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흠치거나 뺏은 돈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여자의 경우 이전에 모아 두었던 돈, 구걸이나 앵벌이, 성매매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13세 이하의 경우 가출할 때 집에서 몰래 흠쳐 온 돈, 흠치거나 뺏은 돈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0세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이전에 모아 두었던 돈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은 나이가 많을수록 응답 높았고 가출할 때 집에서 흠침, 구걸이나 앵벌이, 흠치거나 뺏은 돈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4. 가출 후 비행

먼저 가출 전·후 폭행 경험으로, 가출 전 폭행을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는 청소년 41.4%인 데 반해 가출 후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는 청소년은 48.1%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가출 후 폭행 경험이 적어도 한 달에 1-2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가출 후 10.9% 증가해 폭행 횟수가 가출 후 빈번해 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돈이나 물건을 흠침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출 전(48.1%)보다 가출 후(55.7%) 증가하였으며, 특히 적어도 한 달에 1-2번 이상 흠쳤다는 응답이 가출 후 15.1%나 증가하였으며, 가출 전·후 돈이나 물건 흠침은 나이가 어릴수록 일주일에 1-2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인 유흥업소 출입은 가출 전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다는 응답(18.7%)이 보다 가출 후(25.1%) 더 많아졌으며 가출 후 적어도 한 달에 1-2번 이상 하였다는 응답은 19.1%로 가출 전보다 7.3% 증가하였다. 또한 환각제, 약물복용 경험은 한 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다는 응답 가출 전(7.9%)보다 가출 후(9.1%)에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6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가출 후는 물론 가출 전부터 약물복용의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음란영화, 비디오 등 음란매체 경험은 가출 전 43.4%가 한 번이라도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가출 후에는 41.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오히려 다소 줄어들었다. 돈을 받고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은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출 전(5.7%)보다 가출 후(11.3%)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성병에 걸린 경험은 가출 전 6.6%에서 가출 후 11.3%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 생각은 가출 전과 비교해 가출 후 더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가출 후에 의식주 문제, 범죄 비행 등 현실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가출청소년의 61% 이상이 가출 전·후에 자살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매우 척박하고 힘들어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특히 자살 시도가 가출 전(28.1%)보다 가출 후(31.1%)에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주관

적 판단에 의한 답변으로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지만 어떤 형태이든 자살 시도가 상당수의 가출 청소년에 의해 고려되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출 전·후 청소년들이 경험한 문제 행동을 조사한 결과 폭행, 돈 뺏기, 돈이나 물건 훔침, 성인 유흥업소 출입, 이성과의 혼숙, 성매매, 약물 복용 등 대부분의 비행이 가출 전보다 가출 후에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출 빈도가 높을수록 비행 횟수도 증가하였다.²⁶⁾

IV. 가출 청소년을 위한 대처방안

가출 자체가 하나의 비행일 뿐만 아니라 가출을 예방함으로써 가출로 인한 추가적인 비행의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한 한번 가출을 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여도 가출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비행에 가담하게끔 하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출자체에 대한 예방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가출의 원인에 대한 파악부터 이루어져야하며,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자의 연구문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출원인들을 개인적 요인과 가정, 학교, 사회 환경 요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가출 청소년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사회 지원체계의 개선할 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가출 청소년이 겪는 갈등, 좌절, 번민 등의 중요한 원인의 한 가지는 그들이 나름대로 사회적 유용성을 찾지 못하는데 있다. 그들의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갖고 있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무엇인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애쓴다. 그렇게 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에서 그들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자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자아상, 자신감 및 대인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가출 청소년들은 성인과의 각종 문제 및 이들의 권위로 인해 성인들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담 시 이 점을 유의하면서 상담에 임하여야 하며 지지적인 상담을 위해서 개인별 서비스를 위한 사례별 프로그램

26)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가출 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58면.

램을 초입 단계에서 보다 나은 진단과 측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가출 청소년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고 볼 때,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대처기술, 즉 바람직한 능력발휘훈련, 자아존중 개선훈련, 적절한 자기주장기술훈련 등을 가르쳐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 밖에도 긴장완화훈련, 명상훈련 등을 통하여 가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요인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반응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최소한 자신의 불안, 분노 등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가출 청소년을 위한 취업 혹은 독립적 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가출 청소년들로 하여금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알선, 주거지 확보, 그리고 혼자라는 삶에서 직면하는 책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등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책이 적실히 요구된다.

2. 가정환경 요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개선 및 가족공동체의 재구성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청소년 문제나 가출 청소년의 일차적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가정에 있고, 그 책임도 가정에 있다고 하겠다. 즉 자녀가 가출한 후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는 가족이 다 함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가출을 그 자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가족 문제로 보는 시각이 바람직하다. 앞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족요인은 자녀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출충동을 느끼게 되는 자녀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를 이해하도록 하고 대화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간에 불화, 부모의 폭력 및 학대,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은 가출에 대한 충동뿐만 아니라 가출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통해 자녀가 좌절하고 탈출해보려는 욕구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출 예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요보호청소년,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3. 학교환경 요인

학교교육은 가정을 떠나서 제2의 사회집단으로 선생님께서로부터 교육을 받고 선후배, 동급생간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인격을 연마하는 사회의 주체이다. 따라서 가출문제는 반드시 가정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가정이든 학교든 기존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을 떼어놓음으로써 문제를 회피하거나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특히 이와 같은 가출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교육 분위기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즉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외된다는 것은 가출의 원인의 되기도 하고 그 밖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는 학생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하여 가출 청소년을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학업중단은 가출과 매우 밀접한 관계임으로 가출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등을 통하여 지원체계를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출한 경험이 있는 학교청소년들 중에는 학교생활에 부적응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발견하여 문제를 듣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편 비행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징계·처벌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무작정 학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들을 학교에서 흡수하여 교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위기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식주문제 등을 해결해주도록 학교의 지원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단기적으로 최선의 방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이 학교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다.

4. 사회 환경 요인

청소년기본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라고 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라 함은 역으로 청소년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유익한 시설 및 장소, 건전한 정보환경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접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와 정보환경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법조항과 달리 사회유해환경 늘어나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다.

오늘날 사회는 청소년문화에 접하는 기회가 확립하지 못 하였다. 즉 청소년문화는 기성세대에 의해 과도하게 이끌려 왔을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형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지도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정화와 차단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청소년들의 출입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앞서 가출 청소년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의 약 25%가 성인 유흥업소 출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식주 해결을 하기위하여 음식점, 주유소, 술집이나 유흥주점, PC방이나, 노래방 등에 취직, 심지어 성매매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청소년을 고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을 필요로 하는 유흥 산업은 청소년을 하여금 가출을 가능하게 하고 또 여기에 빠져서 쉽게 돈을 벌게 되리라는 유혹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환경과 관련된 해결방안은 정부에서 법적 규제 강화 등으로 청소년들의 가출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영상매체로부터 청소년의 가출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유해영상 매체로부터 보호방법으로는 TV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청소년용 우수프로그램 개발, 각종 심의제도 강화, 음란디스크, 음란비디오 등 퇴폐영상물퇴치, 유해환경고발센터 지원 등이 되겠다.²⁷⁾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작업에 관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기존의 교육기관과 사회단체, 언론기관, 종교단체, 기업, 자원봉사인력 등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가출 청소년 관련 법규 및 사회적 지원체계의 문제점

(1) 가출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체계상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청소년관계 입법은 미성년자보호법(1961), 아동복지법(1981), 청소년육성법(1987), 소년법(1988, 전문개정)등 청소년의 보호·선도·육성 등을 입법취지로 하는 경우 외에도 교육법(1949), 학교보건법(1967), 사회교육법(1980)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법 적용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 등 각 법령별로 입법 취지와 적용대상을 달리하면서 부분적·단편적으로 제정·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주요 법규에서는 청소년을 다양하게 구별하고 있어 중복되면서 동시에 동

27) 권이중, 전계서, 340면.

일 대상을 다르게 명명하고 있는 혼란을 초래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규 따라서는 청소년을 아동, 연소자, 청소년, 미성년자, 소년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범위도 청소년복지이념과 밀접한 관련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미만인 자로,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각 19세 미만인 자로 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²⁸⁾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따라서 청소년관련법에서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불분명하다.

첫째, 소년법에서는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하는 것' 10세 이상의 소년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출 청소년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비행청소년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원의 소년부에 의해 내려지는 보호처분에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외에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 하는 경우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이 보호조치는 가출 청소년을 수용하는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겠다. 이는 가출 청소년이 소년법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선도하고 지도하여 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의 규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구문의 법률상 해석의 다양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출 청소년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문제를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법에 대하여 우선 청소년성보호법의 사회적 성격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복지 귀를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윤리방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간의 처리과정상 비형평성 문제개선으로 가출한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한 업주나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요구된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과 같은 조치가 제대로 실행될 만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또한

28) 2007. 12. 21. 개정. 2008. 6. 22. 시행. 법률 제8722호.

청소년보호센터와 같은 보호시설수가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마련되어 있는 시설마저도 운영과 법 규정의 미비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 규정의 현실에 알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²⁹⁾

셋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러한 규정에서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와 청소년의 성장 발달 그리고 교육적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서 학생으로서의 위치에 있게 됨으로써 학교 내의 단체 활동을 비롯한 학생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소외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제6조, 제7조, 제8조를 살펴보면 가정의 역할, 청소년은 모든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모든 국민의 청소년에 대한 의무내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출 청소년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을 떠난다는 사실은 많은 가정들이 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유해환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사회 환경의 문제점들은 이 내용의 괴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활동 외에도 청소년기본법상 가출청소년보호활동에 관련될 수 있는 조항으로는 제6장의 청소년복지에 관한 규정인 제46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가출청소년보호의 법적근거로 기능하기에는 한계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현재는 단기시설에만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을 위한 증장기 보호시설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로 하겠다.

넷째, 청소년보호법은 이법은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행위 등 이른바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규제법으로서 성격이 강하지만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근하거나 그 구성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제도도 가출 청소년보호에 활용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와 폭력을 받은 청소년, 가출 청소년, 성범죄 피해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약물남용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 통합적으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인센터(Drop-in-Center)를 개설하여 운영

29) 홍봉선,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2006, 78면.

하고 있지만, 이들 운영에는 가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이 빠져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들만 있을 뿐 가출, 폭력과 같은 유해한 행위나 행태로부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규정들이 빠져있다. 또한 경찰이나 아동복지지도원과 같이 가출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가출 청소년 발견 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돌려 보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기관에서 도움을 제공하거나 가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보호기관에 찾아오는 경우 특별한 허가 없이,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에게 인계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보호에 대해 가출원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일치된 규정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간시설에도 가출 청소년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가출 청소년 관련된 주요 법규들을 살펴보면, 가출 청소년 보호와 개선책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 가출과 관련된 법의 시대적 변화와 요청에 따른 법률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최근의 사회적 욕구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출 청소년과 관련된 법규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이해하고 우리도 조속히 가출 청소년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겠다.

(2) 가출 전·후 위기관리 체계 확립

2000년도에 문화관광부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응급 전화라인을 개설한 바 있으나 현재 24시간 상담운영체계를 갖추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182 신고전화는 전국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게 가출 청소년을 찾아 보호자에게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출 청소년의 인적 상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수배하고 있지만 가출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가출 청소년들을 돕는 제도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에서의 위기로 가출충동을 느끼게 되는 청소년들이나 이미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들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가출에 대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청소년과 부모 모두에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전국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국립 가출전화(National Runaway Switchboard)를 두고 부모가 자녀들을 찾는데 필요한 다양한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³⁰⁾ 이 긴급직통전화는 자원봉사체제로 24시간 운영되고

가출 청소년이나 보호자 등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긴급보호소, 상담센터, 진료소, 법률기관들과 같은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연결시켜주며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담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상시 긴급전화시스템을 운영하여 적절한 위기개입이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청소년쉼터의 서비스 문제점

청소년쉼터는 국가 차원에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장·단기간 안식처를 제공하고 비행예방과 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시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이러한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한 가출 청소년들의 자아성장을 위한 전문상담활동, 생활지도프로그램, 교육활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거리상담 및 가출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잠재적인 청소년 가출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쉼터는 2006년도 현재 청소년쉼터는 71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국비)의 지원만 받는 곳은 1개소(YMCA 쉼터)이며,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지원받는 곳은 62개소, 순수 지방비만 지원 받고 있는 곳은 8개소이다.³¹⁾ 한편 제주도내 청소년쉼터³²⁾는 2개소로 제주청소년쉼터(가출소녀 단기보호시설)와 제주성지청소년쉼터(가출소년 장기보호시설)가 있다. 제주청소년 쉼터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도·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소녀를 3개월간 보호해 주고 있는 단기보호시설(정원12명)이다. 최장 6개월까지는 보호를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법적으로 보호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22세까지는 이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나면 이곳을 떠나 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이들 청소년들을 보호하면서 가정 및 학교, 사회복귀를 돕고 있지만 프로그램 등이 빈약해 가출 청소년들의 사회복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곳 쉼터는 가출 청소년이 일단 입소하면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한 후 쉼터 생활적응을 위해 1주일간은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한다. 즉, “1주일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며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해온 이들에게 1주일을 견딜 수 있어야 3개월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러 쉼터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식들을 보면 어떤 체계적이고 통일된 방식이 아니라 주목구구식의 방식이 많다. 앞서 설명해 듯이 청소년 쉼

30) 연성진,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18면.

31)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176면.

32) 한라일보, 2007. 4. 9. 7면.

터에 입소하면 일단 외출이 거의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가출 청소년들이 너무 엄격한 통제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며 또 다른 쉼터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운영되는 쉼터도 있다.

그러므로 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가출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부각된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가출 청소년들은 최근 들어 위기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가출문제에 있어서 청소년 개인과 가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한 대응방법이라 하겠다. 가출 청소년은 자신들의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끝내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높이고 하고 많은 부정적인 측면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만든다. 가출 청소년 가족들은 또한 역기능적인 구조를 지니게 됨에 따라 위기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에 부적응과 지역사회환경으로부터의 유해환경에 출입 등으로 개인, 가족, 학교, 사회가 모두 위기에 놓여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출 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가출 시기가 남자가 여자보다 최초의 가출을 먼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최초 가출의 평균연령은 남자인 경우 12.8세이고, 여자인 경우는 13.4로 나타났으며, 가출연령이 점차 저연령화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가출기간도 단기에 장기 가출 그리고 상습적인 가출이 빈도가 증가 하는 것이 특징이며, 또한 가출 후 첫날밤에 잠잔 곳은 친구 집 또는 아는 사람의 집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출에 대한 친구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밖에 장소도 점질방, 노숙, 여관, PC방, 만화방 등이 많이 나타났다. 그 밖에 이들은 가출 후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유흥업소, 식당, 주유소 등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가출생활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성매매, 절도, 약물복용 등 가출 전보다 가출 후의 비행 횟수도 증가 하였다. 이러한 모든 점을 볼 때 가출이 비행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이 가출 후 겪게 되는 위험과 비행은 심각하므로 그 대책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가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일시적이 보호나 귀가초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중·장기보호 서비스는 매우 미미하였다. 이에 대한 가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지원할 수 있는

현재 청소년관련법으로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개념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가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체계의 규정을 가출 청소년 관련법으로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넓게는 가출 청소년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가 변화되어야 하며, 또한 임시위주의 주입식 학교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좁게는 가족과 가출 청소년이 갖는 다양한 정서,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사회 지원제도의 서비스가 필요로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출 청소년이 가출 후 겪게 되는 위협과 비행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가족은 엄청난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이종, 「청소년 이해론」, 교육과학사, 2006.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 학지사, 1998.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학지사, 2009.
 이용교,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2002.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5.
 한상철, 「청소년 문제행동」, 학지사, 2003.
 홍봉선,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2006.
 연성진,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Roberts(1987), *Runaways and Non-Runaways-An Exploratory Study of Adolescent and Parental Coping*-The Dorsey Press Chicago, Illinois p. 42.
 Shellow et al. (1967) *Suburban Runaways of the 1960's*. Monographs of the Societh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2(3) pp. 1-51.

[Abstract]

A Study on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ping Plans for Runaway Juveniles

Rim, Kye-Ryung

Ph. D. Candidate, Dept. of Law, Jeju National Univ.

Delinquency is not a simple behavior that people leave home, but it can make them put in danger in that it can lead to delinquency and crimes through the harmful circumstance in the view of individual and society. However, the systematic and synthetic coping plans have not been designed and the recognition about this problem is lack in the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y as well as the public although this evil practice is a serious social issue. Delinquency should be prevented in advance by keeping teenagers from leaving home or school. Furthermore, the policies should be devised so that they can come back home and to the society for runaway juveniles not to give in to delinquency and crimes.

This Study has been examined the definition and types of runaway juveniles based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through the literature related to runaway juveniles. In addition, it has examined how runaway impulse and runaway experience are related to runaway as a result rather than understanding of runaway that is connected to various services for runaway juveniles. Moreover, the publication and statistics data have been analyzed to grasp the realities of runaway juveniles and the problems that runaway juveniles face before and after runaway and related laws and ordinances have been researched.

Lastly, the improvement plans have been suggested in relation to work for individuals, homes, schools and the society to do so as to protect juveniles.

Key words : runaway, coping, juveniles, protect, the harmful circumstance